

I 장학금 개요

지원금액(한 학기 1인기준)

- 등록금 범위 내 소득분위 등에 따라 200만원, 150만원, 100만원, 50만원 단위로 지급
- ※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잔여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

지원대상

- **농업인의 자녀**(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대학 : 첨부 3)
 - ※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, 부모가 반드시 농업 종사자여야 함
 - ※ 단, 교육부 지정 2019년 정부재정지원 전면 제한 대학(11개교)¹⁾는 지원 불가
-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(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: 첨부 2) 발행 가능한 재학생
 - ※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며 지원가능하며,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재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

선발성적/이수학점

- '18.2학기 성적 백분위기준 80점 이상(정규학기 기준, F학점 포함), 12학점 이상 (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: 3학점 이상) 이수자
- ※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
- ※ 단, 소득분위(기초~3분위)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기준 70점 이상 신청가능(정규학기 기준, F학점 포함, 12학점 이상)

소득분위

- '18.2학기 소득분위 기초~8분위만 신청가능 (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)
- ※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
- ※ 소득분위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통해 가능

최대 지원가능 학기

- 최대 8개 학기
- ※ 계속지원 조건 충족 시 4년간 지원
- ※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(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)

심사 및 계속지원 조건

- **기본요건** : 성적(백분위 80점이상, 12학점 이상), 재학생, 농업인자녀, 소득분위(기초-8분위)
- ※ 단, 소득분위 기초~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 인정 (정규학기 기준, F학점 포함, 12학점 이상)
- **신규자** : 기본요건 충족자 중 항목별 배점지표(성적, 소득분위)에 따라 심사
- **계속자** : 기본요건 충족자

계속자 자격상실 기준

- '18.2학기 성적 80점 미만인 자
- ※ 단, 소득분위 기초~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 성적 70점이상 인정 (정규학기 기준, F학점 포함, 12학점 이상)
- '18.2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미만인 자
-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는 '18.2학기 이수학점 3학점 미만인 자
- '18.2학기 소득분위(기초~8분위) 미충족자
- 구비서류 불충분(미비) 제출자
- **휴학생(일반휴학, 균휴학 포함)**, 편입, 제적, 자퇴, 징계,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
- 복학예정자는 휴학 시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해 신규 신청 가능
- 편입한 학교에서 '18.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가능 (전공심화자도 동일 적용)
- 전액장학생, 등록금초과 등으로 재단 장학금 포기자
- ※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차기학기부터 신규자로 재신청해야함

1) 경주대학교, 광양보건대학교, 동부산대학교, 부산장신대학교, 서해대학, 신경대학교, 영남외국어대학교, 용지세무대학교, 제주국제대학교, 한국국제대학교, 한려대학교

II 신청기간

□ 신청(구비서류 업로드 등) 기간 : '19.1.3(목) 10:00~1.15(화) 17:00

※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

III 신청방법 및 선발절차

□ 신청방법(학생→재단)

- ① 신청자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(인증절차 후)→② 장학금 신청하기→
③ 구비서류 업로드(첨부 1, 2)→④ 장학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→⑤ 신청완료

【주의사항】

-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
- 신청 후,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
- 농업인자녀 장학금 신청시 : “농림축산식품부” 로 신청

□ 선발절차



IV 장학금 지급 및 반납

1. 지급방법 (재단→학교→학생)

- (재단→대학) 최종 선발된 학생 소속대학에 장학금 지급
- (대학→장학생)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학생계좌로 직접입금

2. 장학금 반납

가. 반납대상

- (전액장학생) 교내·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한 자
- (등록금초과자)
 - 국가장학금(1)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50만원 단위로 부분반납
 - ※ 단 학생이 재단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장학금(1)을 등록금 범위 내로 조정
 - 교내·외 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교내·외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내로 조정
- (기타사항)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
 - 휴학(일반휴학, 군휴학 포함), 편입, 제적(퇴학), 자퇴, 징계,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
 - 재단지침에 의한 자격상실 대상자, 장학금 포기자 등
 - ※ 단, 질병,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재단과 협의

나. 반납방법 (학생→학교→재단)

- 재단 장학금 지급 전 : 해당학교 장학부서에 장학금 즉시 취소 요청
- 재단 장학금 지급 후
 - (고지서에서 선감면 된 경우) 해당학교 장학부서에서 재단으로 반납
 - (학생 계좌로 입금 된 경우) 학생은 학교로 반납하고 학교는 재단으로 반납

V '19.2학기 주요 변경사항 예고

구분	(현행) '19.1학기	(변경) '19.2학기
휴학생 계속자 자격상실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휴학할 경우 - 전액 반환 (계속자격 상실) - 복학학기에 신규자로 신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등록 휴학할 경우 - 장학금 이연처리*(계속자격 유지) * 이연처리 :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여, 복학 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·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미등록 휴학할 경우 - 전액 반환(계속자격 상실) - 복학학기에 신규자로 신청

VI 추진일정 * 추진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선발공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선발계획 공고(재단 홈페이지) ▪ 각 학교 공문 발송 	재단	'18. 12. 27(목)
신청접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온라인 신청(www.rhof.or.kr) 및 구비서류 업로드 ⇒ 반드시 PDF파일로 저장 후 해당란에 업로드 	학생	'19. 1. 3(목) 10:00 ~1. 15(화) 17:00
발 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장학생 선발결과 공고(재단홈페이지 및 소속대학) 	재단	'19. 2. 13(수)(예정)
지 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장학금 지급은 대학별로 상이하오니 해당 대학에 문의 	대학	'19. 3월 중

【첨부 1】 ※ 신청자 학생은 모든 구비서류 원본을 반드시 스캔후 PDF 변환 후 업로드 해야함

신청자(학생본인) 장학금별 구비서류 안내		
구분	신규자	계속자
재학증명서 원본 1부 * 복학예정자는 재적증명서 원본 1부 (단, 복학예정일이 반드시 명기되어 있어야 인정)	제출	
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 원본 1부 * 증빙서류 안내 참조	제출*	
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* 농업인과 학생 본인관계 확인 등을 위해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	제출	
성적증명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별도 제출하지 않음 ▪ 교직원인 성적확인 후 최종 입력예정 	

* :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만 인정(본인의 농업인 증빙서류는 미인정)

- (구비서류 발급기간) **'18.11.26(월)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**
 - (구비서류 제출형태) **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**
 - (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)
 - **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오니 반드시 마지막 서류까지 스캔하여야 함**
 - **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공기관 제출용 문서로 발급하여야 함**
- ※ 구비서류 미비 또는 잘못 제출된 서류는 탈락 사유가 되오니 제출 전 철저히 확인바랍니다.

【첨부 2】

농업인 증빙서류 안내

- ※ 아래 구비서류 중, 선택하여 1개만 제출하면 농업인으로 인정함
- ※ 농지원부는 농업인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상기 명기된 구비서류로 제출

구 분	구비서류	발행처
농 업 (축산업)	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	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* 반드시 변경이력이 나오도록 발행
	■ 농업경영체 증명서	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
	■ 농업인확인서	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
	■ (한우·육우 등 양육업) 축산업(가축사육업) 등록증 1부와 개체확인 각 1부 ■ (양돈·양계업) 축산업(가축사육업)등록증 1부와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1부	■ (축산업등록증) 관할 사·군·구 ■ (개체확인) 축협 ■ (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) 각 거래처 ※ 등록증은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제출 ※ 개체확인 및 출하내역확인서 (또는 사료거래확인서)는 1년이상의 실적이 기재되고,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
임 업	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	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* 반드시 변경이력이 나오도록 발행
	■ 농업경영체 증명서	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
	■ 농업인확인서	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
	■ 산림조합원 증명서 및 1년간 실적증명서 각 1부	■ 관할 사·군 산림조합

- (구비서류 발급기간) **‘18.11.26(월)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**
- (구비서류 제출형태) **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**
- (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)
 - 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축산업(가축사육업)등록증 1부(앞쪽, 뒤쪽 모두 스캔)와 1년 이상의(‘17.12.26 이전부터~현재) 실적이 기재된 개체확인 및 출하내역확인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인정
 - 임업인의 실적증명서는 1년이상의(‘17.12.26 이전부터~현재) 실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, 거래처에서 실적증명서를 받아 제출
 - **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오니 반드시 마지막 서류 까지 스캔하여야 함**
 -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공기관 제출용 문서로 발급하여야 함